

[일련번호 : 2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외국인체류지 변경신고 업무처리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과는 「출입국관리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출입국관리법」 제36조(체류지 변경의 신고)에 따르면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에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,

또한, 법무부 「체류지변경(국내거소이전) 신고 및 사실증명서 등 발급 업무편람」에 따르면 체류지 변경 신고 시, 체류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'체류지 입증서류(사본보관)'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출서류는 1) 신청서(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5호의 4~8 서식) 2) 신분증명서 3) 체류지 입증서류이며, 체류지 입증서류에는 ① 주민등록등본 ②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③ 매매계약서 ④ 기숙자입주확인서 ⑤ 숙소제공확인서(거주·숙소제공확인서 제출자는 거주·숙소제공자 신분증상의 주소 정보와 숙소제공확인서의 외국인 신 체류지가 동일할 경우 신분증 사

본을 제출받아 처리하되, 숙소 등 제공자 신분증 상 주소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숙소의 주소가 다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징구) ⑥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과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총 11건에 대하여 체류지 입증서류 미비, 거주/숙소 제공확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서류가 미비하였음에도 보완요구 없이 변경신고 처리하였다. (세부내역 별도 송부)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